

발 간 등 록 번 호

34-9760887-120020-14

2012. 12. 19(수) 실시

제18대 대통령 선거

# 알기쉬운 선거운동 길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m.1390.go.kr>

## 유권자의 날 「매년 5월 10일」 제정

☞ **제정배경** :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유권자의 날’은 국민주권의 가장 중요한 실현과정인 선거와 투표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유권자의 권한과 책임 등에 관하여 그 의미를 되새기고 조명함으로써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률로 제정 되었음 <신설 2012. 1. 17>.

### ●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한 이유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한민국 제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제헌국회 총선이 실시된 1948년 5월 10일을 의미하는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 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정함 (공직선거법 § 6의⑤).





# 일 러 두 기

이 자료는 2012. 12. 19(수)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법이 지켜지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한 길잡이로 삼고자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에 대하여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문의에 대한 답변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자료에서 열거된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선거운동방법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http://www.nec.go.kr)) ⇨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웹([m.1390.go.kr](http://m.1390.go.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번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법령표기

- 공직선거법 ⇨ ‘법’으로 표기
- 공직선거관리규칙 ⇨ ‘규칙’으로 표기
-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 ⇨ 법 §58①으로 표기

## 참 고

“선거운동 길잡이” 책자 배부 후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 자료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추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모바일 웹」 등 선거법 안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가능한 휴대전화로 「모바일 웹」 사이트(m.1390.go.kr)에 직접 또는 QR코드를 통해 접속하면 선거법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제별로 분류한 알기쉬운 선거법, 정치관계법규 조회, 판례·헌재 결정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선례 조회 등 다양한 법규안내 서비스와 선거콜센터 전화결기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선거법잡이」·「선거법령」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설치방법 〉  
안드로이드 마켓(play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선거법잡이」·「선거법령」 검색 → 설치



「모바일 웹」 사이트를 유용하게 활용하여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규나 선거운동 방법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시면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대표 전화 “1390” 번을 통한 **ARS 투표소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 하오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ontents

## 투표참여 권유행위와 당내경선 선거운동

[안내1]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투표참여 권유행위 / 8

[안내2] 당내경선 선거운동 / 13

### Part I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사항

1. 상시제한(언제든지) / 20
2. 특정시기 제한 / 22
3. 선거일후 제한 / 24

### Part II 선거운동 개관

1. 선거운동 정의 및 선거운동기간 / 26
  - 가. 선거운동 정의 등 / 26
  - 나.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투표참여 권유행위 / 30
2.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31

### Part III 허용된 사전선거운동(선거일 제외)

1.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 36
2.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 36
3. 인터넷홈페이지·전자우편 및 SNS 이용 선거운동 / 41
  - ※ 공직선거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수내용 / 47

### Part IV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1. 선거사무소 / 50
2. 어깨띠·표지물, 전화 / 51
  - 가. 어깨띠·표지물 / 51
  - 나. 전화 / 53
3. 인쇄물 / 54
  - 가. 명함 / 54
  - 나. 예비후보자홍보물 / 57
  - 다. 예비후보자공약집 / 60



1. 선거운동기구 / 64
  - 가.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 64
  - 나. 선거사무소 등의 개소식 / 67
2. 정당선거사무소 / 69
3.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및 실비보상 / 72
  - 가.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 72
  - 나. 수당과 실비보상 / 74
4. 인쇄물 / 77
  - 가. 선거벽보 / 77
  - 나. 선거공보 / 79
  - 다. 선거공약서 / 81
5. 현수막 / 83
6. 어깨띠 등 소품 / 85
7. 신문광고, 방송광고, 인터넷광고 / 88
  - 가. 신문광고 / 88
  - 나. 방송광고 / 90
  - 다. 인터넷광고 / 91
8. 방송연설, 경력방송 / 93
  - 가.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 93
  - 나. 경력방송 / 95
9.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 96
10. 대담·토론회 / 102
  - 가.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 102
  - 나.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 104
  - 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 106
11. 전화 / 107
  - ※ 제18대 대통령선거 주요일정 / 110





- 투표참여 권유행위
- 당내경선 선거운동

1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법 §58)

● 주 체

- 누구든지

● 시 기

- 언제든지

● 매 체

- 인쇄물, 시설물, 인터넷광고 등

● 내 용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음.

● 금지내용

-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함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함에 있어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함에 있어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행위
  - ※ 아래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사례라도 그 행위의 주체·내용·방법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투표참여 권유활동 해당여부 등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0번**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1

정당이나 후보자가 그 명의를 부각·선전하는 내용없이 현수막·피켓 등 시설물, 전단지 등 인쇄물, 신문이나 인터넷 광고를 이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호별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는 **위반**됩니다.

※ 선거일 전에 게시된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 게시해 두면 위반됨("투표참여 권유행위"와 관련하여 이하 같음).

2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매체(신문, 인터넷 광고, 현수막, 인쇄물 등)에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를 게재할 수 있나요?

☞ 후보자의 사진·기호 게재는 **불가능**하고,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 게재 내용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보다 강조되어 투표참여 권유라기 보다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때는 **위반**됩니다.

3

정당이 정당을 부각·선전하는 내용없이 "당마크, △△당, 12월 19일 꼭! 투표합시다"란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 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 게시하면 **위반**됩니다.

4

정당이 정당을 부각·선전하는 내용없이 정당 대표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 게시하면 **위반**됩니다.



5

후보자가 후보자를 부각·선전하는 내용없이 "12월 19일 꼭! 투표합시다. 후보자 ○○○"란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 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 게시하면 **위반**됩니다.

6

정당이나 후보자가 거리에 게시하는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에 정당을 선전하는 문구를 게재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다만, 정당의 명칭과 로고 게재는 **가능**합니다.

7

정당이나 후보자가 피켓에 "특정 정당의 명칭이 표시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투입하는 내용"을 넣어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나요?

☞ **선거운동기간중**에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운동용 소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외의 자가 사용할 경우 그 정당을 지지·추천하는 내용에 해당되어 **불가능**합니다.

8

정당이나 후보자가 신문, 인터넷광고, 현수막, 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투표참여 권유 활동시 횟수나 수량에 제한이 있나요?

☞ 횟수나 수량 제한은 없습니다.

9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함에 있어 참여활동을 하는 인원수에 제한이 있나요?

☞ 인원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활동하면 **위반**됩니다.



10 후보자가 선거일에 그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함이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11 선거일에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정당선거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나요?

☞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없이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가능합니다.

12 정치인 팬클럽이 특정 정당의 정책이나 후보자의 공약이 게재된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 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13 개인이 “정치를 바꿉시다. 꼭 투표합시다. 또는 썩어빠진 정치를 바꿉시다. 꼭 투표합시다.”란 내용으로 피켓을 들고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캠페인이 가능한가요?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어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권유 활동을 하면 위반됩니다.

14 개인 또는 단체가 자신의 경비로 특정 정당의 명칭이 표시된 투표 참여 권유 피켓이나 현수막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 정당을 선전하는 행위가 되어 불가능합니다.

15

개인 또는 단체가 자신의 명의로 투표참여 권유 피켓을 제작하여 거리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활동을 하면 **위반**됩니다.



2

당내경선 선거운동(법 §57의3)

● 경선운동방법이 제한되는 경선

-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선만 해당 (당내경선)
- 당내경선은 선관위에 위탁 뿐만 아니라 정당 자체실시 경선에도 적용됨.
  - ※ 당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은 당해 정당의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선운동을 할 수 있음.

●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 당내경선후보자(경선후보자로 등록된 예비후보자 포함)

● 당내경선운동 방법

-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 선거사무소에 현수막·간판·현판(현수막 등) 설치·게시
  - 현수막 등은 수량·규격 제한 없음
- 명함 직접배부·지지호소
  - 경선선거일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는 명함 직접 배부 및 지지호소 금지
  - 명함규격 : 길이 9cm 너비 5cm 이내
  - 기재내용 :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 배부금지 장소
  -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지하철역 구내 포함)
  -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 경선희보물 1종 1회 발송
  - 발송주체 : 해당 정당
  - 규격 및 면수 :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8면 이내
  - 작성수량 : 경선선거인수의 100분의 3 이내(단수가 100미만인 때 100매)
  - 표시내용 : 앞면에는 “경선후보자홍보물” 명칭표시, 작성근거  
(이 경선후보자홍보물은 공식선거법 제57의3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 인쇄소의 명칭·주소·전화번호 표시
  - 발송방법 : 법정 발송용 봉투에 의한 우편발송
    - ※ 경선후보자가 모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경선희보물”을 우편발송하지 아니하고 합동연설회·합동토론회 등에 참석하는 경선선거인에게 직접 배부 할 수 있음.
  - 발송신고 : 발송일전 2일까지 홍보물 4부를 첨부하여 중앙선관위 서면신고
-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
  - 주체 및 장소 : 해당 정당, 옥내
  - 개최장소에 현판 및 현수막 각 2개(각 20㎡) 이내 게시 가능.  
다만, 애드벌룬·기구류 이용 금지
    - ※ 개최되는 시설의 입구나 담장 또는 그 구내(옥외를 말함)에 게시하되, 게시기간은 개최일 전일부터 개최일까지임.
  - 개최신고 등 : 개최일 전일까지 중앙선관위 서면신고
    - ※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는 개최시각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중앙선관위 서면 신고

## ● 기 타

- 위법경선운동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봄.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법 §60)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 금지
- 정당이 당내경선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 그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해 정당에 하여야 함.
  - ※ 아래 자주묻는 질문은 법 §57의3①에 의한 경선운동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1** 대통령선거 당내경선후보자인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방법으로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내용을 게재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별도의 인쇄물 배부는 불가능합니다.
  
- 2**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인 예비후보자가 당내경선 투표소 입구(외부)에서 “당내경선 기호○”을 인쇄한 명함의 배포와 어깨띠 착용이 가능하나요?

☞ 어깨띠 착용은 가능하나, 당내경선의 선거일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 마감시까지 투표소 주변에서 경선선거인을 대상으로 자신이 직접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의 대통령선거 당내경선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경선운동을 할 수 있나요?

☞ 법 §57의6에 불구하고 경선운동이 가능합니다.
  
- 4**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아닌 경선후보자가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방법으로 당내 경선운동을 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 5** 대통령선거 당내경선후보자인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6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가 선거구민으로부터 응원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의례적인 내용의 감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 가능합니다.

7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가 아닌 경선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또는 예비후보자 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경선후보자가 정당이 정한 바에 따라 **당원인 경선선거인만을 대상**으로 경선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8

대통령선거 당내경선후보자의 지지자들이(당원 및 당원이 아닌 자 포함) 경선운동을 할 수 있나요?

☞ 경선운동은 경선후보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불가능**합니다.

9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의 이중적 신분으로서 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을 함께 하는 때에 경선운동기구에서 경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나요?

☞ 수당지급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경선운동기구에서 경선사무에 종사하는 자(30인 이내)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의 식사료(1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가능**합니다.

10

정당이 대통령선거 경선 선거인단 모집에 필요한 가입신청 요령, 절차, 투표방법 등을 포함하여 신문에 광고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일전 90일(9. 20)부터는 법 §137에 따라야 합니다.

11

정당이 대통령선거 당내경선 선거인단의 모집을 위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광고(배너광고 포함)하여 당원이 아닌 자를 투표권자로 모집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12

정당이 대통령선거 당내경선 안내 및 선거인단 모집을 위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나요?

☞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불가능**합니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 하면서 부수적으로 경선 안내 및 선거인단 모집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3

정당이 당헌·당규에 따른 당내경선 선거인단 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인단을 모집할 수 있나요?

☞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선전·권유함이 없이 선거인단 모집은 **가능**합니다.

14

정당이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위하여 거리에서 그 가입을 권유·설득하거나 선거인단 모집신청서를 배부할 수 있나요?

☞ 통상적인 정당활동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불가능**합니다.

15

정당이 대통령후보자 선거인단 모집을 위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호별방문하여 홍보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16

정당이 당해 정당소속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가 개최하는 간담회·강연회·의정보고회에 참가(옥내)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경선선거인단 모집을 위한 단순한 설명자료 배부 및 선거인단 신청을 받는 행위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17

정당이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방송사 스튜디오(옥내)에서 개최하고 이를 방송사나 언론사가 중계방송을 할 수 있나요?

☞ 공정하게 취재·보도(중계방송 포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8

정당이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 합동토론회 개최에 대하여 포털 사이트 또는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 해당 정당의 경선위원회 명의를 인터넷 배너광고를 게시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19

정당이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 합동토론회를 종합편성채널(TV조선, 채널A, JTBC, MBN 등을 말함)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해당 종합편성채널이 중계방송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합동토론회는 정당이 개최하여야 하므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종합편성채널이 이를 공정하게 중계방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토론회의 중계방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종합편성채널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 Part I

## 시기별 주요 제한 · 금지사항

1. 상시제한(언제든지) / 20
2. 특정시기 제한 / 22
3. 선거일후 제한 / 24



## Part I.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사항

### 1 상시제한(언제든지)

#### 기부행위의 제한

- 기부행위 주체별 제한

주 체 별	제한기간	제 한 내 용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이하 12에서 같음)와 그 배우자	상 시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포함) 금지(법 §113)
정당(당원협의회, 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정당선거사무소장,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가족 등	선거기간전 (~11.26)	당해 선거에 관한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법 §114)
	선거기간중 (11.27~12.19)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법 §114)
제3자(누구든지)	상 시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 금지(법 §115)

- 야유회·관광·체육대회·등산대회 등 행사에서 금품 등 제공 금지(법 §112)
- 축의·부의금품 등의 제한(법 §112)
-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금지(법 §113)

## ■ 공적지위 관련

-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법 §9)
- 공무원 등의 지위 또는 직업적 관계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법 §85)
-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법 §86①1·2·3)

## ■ 단체활동 관련

- 선거운동이 금지된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 금지(법 §87①)
-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설치 금지(법 §87②)
- 후보자를 위한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법 §89①)

## ■ 언론활동 관련

-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 등 금지(법 §95)
-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법 §96)

## ■ 기타 상시제한행위

- 선거운동을 위한 확장장치 및 자동차의 사용제한(법 §91)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금지(법 §96①)
-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금지(법 §106①)
- 선거운동을 위한 서명·날인받는 행위 금지(법 §107)
-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 금지(법 §230)
-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 금지(법 §244)
- 허위사실 공표 금지(법 §250)
-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법 §251)
- 사전선거운동 금지(법 §254②)

## 2 특정시기 제한

###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2012. 6. 22~12. 19)

- 정당 · 후보자가 설립 · 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전행위 금지(법 §89②)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시설물설치 등 금지(법 §90)
-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 도화의 배부 · 게시 등 금지(법 §93①)
- 정당의 지지도 및 당선인 예상 여론조사 신고(법 §108)

### ■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2012. 8. 21~12. 19)

- 창당 · 합당 · 개편 · 후보자선출대회의 개최장소와 고지의 제한(법 §140)
  - ※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소속당원(후보자선출대회의 경우에는 해당 정당의 공식선거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권이 있는 당원이 아닌자 포함)만을 대상으로 개최하여야 함(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당원이 아닌 자를 초청할 수 있음).

###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2012. 9. 20~12. 19)

- 정당 ·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 연예 · 연극 · 영화 · 사진 기타 물품광고 금지 및 후보자의 광고출연 금지(법 §93②)
- 후보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제한(법 §103⑤)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 제한(법 §111)
- 정강 · 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법 §137)
- 후보자 방송출연 금지(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
  -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음)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에 따른 방송 및 보도 · 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출연하거나, 후보자의 음성 · 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됨(구체적 사항은 '선거방송심의회' 문의)



##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2012. 10. 20~12. 19)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법 §86②)
-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 또는 후보자·정당명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법 §108②)

## ■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2012. 11. 19~12. 19)

- 당원집회·당원교육 등 제한(법 §141)

## ■ 선거기간중 (2012. 11. 27~12. 19)

-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법 §86①5·6·7)
- 저술·연예·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법 §92)
- 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법 §99)
- 녹음기·녹화기 등의 사용 금지(법 §100)
- 타연설회 등의 금지(법 §101)
- 야간연설 등(방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제외)의 제한(법 §102)
- 각종 집회 등의 제한 및 반상회 개최 제한(법 §103②·③·④)
- 입당권유, 공개장소 연설·대담 통지를 위한 호별방문 제한(법 §106①·③)
- 정강·정책홍보물과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제한(법 §138, 법 §139)
- 당원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 제한(법 §144①)
- 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법 §145①)

## ■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2012. 12. 13~12. 19. 18:00)

-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의 공표·인용보도 금지(법 §108①)

## ■ 선거일 (2012. 12. 19)

- 투표마감시각(18:00) 전까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법 §254①)
- 투표마감시각(18:00)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요구 금지 (법 §167②, 법 §241①)

### 3

## 선거일후 제한

### ■ 선거일후 답례금지 (법 §118)

[제한주체 :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

-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 법 §79③에 의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 일반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2012. 12. 20~2013. 1. 1)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

# Part II

## 선거운동 개관

1. 선거운동 정의 및 선거운동기간 / 26

2.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31



## Part II. 선거운동 개관

### 1 선거운동 정의 및 선거운동기간(법 §58, 법 §59)

#### 가. 선거운동 정의 등(법 §58, 법 §59)

##### ● 선거운동 정의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 선거운동 해당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행위에 수반된 제반사정 즉, 행위의 시기·내용·방법·대상·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및 반대함이 없이 투표참여 권유하는 행위. 다만, 호별방문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

##### ● 선거운동기간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2012. 11. 27~12. 18)까지



-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가능한 선거운동방법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재입후보예정자,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포함의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 및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경우 가능한 선거운동방법  
법 §60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따른 선거운동



## 자주묻는 질문

### 1 선거운동과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이나 단순한 의견의 개진이나 또는 의사의 표시나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시기·장소·방법·대상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실태를 관찰하여 선거운동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2 대통령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이 기자회견·당원집회 등 법에서 제한·금지되지 않는 방법으로 다른 정당소속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3 예비후보자가 특정 단체에 초청되어 당해 단체의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강연을 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예비후보자의 정견발표회에 이르게 되면 **위반**입니다.

4

공무원직장협의회(공무원 노조)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있는 사안에 대하여 후보자에게 서면질의 후 회신받은 객관적인 내용을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방법으로 소속회원에 알리거나 보도자료를 제공 또는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지지·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유권자에게 판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5

단체가 정당의 공천반대자 또는 낙선대상자를 기자회견의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 낙선만을 목적으로 벌이는 낙선운동도 선거운동으로 본 판례

후보자 편 이외의 제3자가 당선 목적없이 오로지 특정 후보자의 낙선만을 목적으로 벌이는 낙선운동은 특정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부적격 후보자의 낙선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선거운동과 의미상으로는 일응 구별되기는 하지만, 그 주관적인 목적과는 관계없이 실제의 행동방식과 효과에 있어서는 다른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하는 선거운동과 다를 것이 없음(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6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경력과 공적을 구두로 소개할 수 있나요?

☞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로 보아 가능합니다. 다만, 별도의 소개장이나 소책자 등을 작성·배부하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7

입후보예정자가 법상 규정된 선거사무원수의 범위안에서 선임할 자를 대상으로 선거법 해설 등 강좌를 실시할 수 있나요?

☞ 입후보준비행위로 보아 **가능**합니다.

8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정책공약개발 토론회·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나요?

☞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아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계속적·반복적인 개최는 **불가능**합니다.

9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기 위하여 선거와 무관하게 강연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아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개최하거나 예비후보자가 연사로 참석하여 자신의 정견 등을 홍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0

후보자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후보자 및 그의 선거공약에 대하여 지지도를 조사하고 실시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없고, 표본오차율·응답율 등을 알 수 없는 선거에 관한 '인터넷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없습니다.

11

예비후보자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이나 평전을 제3자가 출간하거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 저서 출간은 **가능**하나,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호소 내용이 포함되거나 선거공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저서 출간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선거일전 90일(9. 20)부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관련 저서 출판기념회는 **불가능**합니다.

12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저서를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광고할 수 있나요?

☞ 선거일전 90일부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의 광고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13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기자를 대상으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면서 주요 선거공약을 발표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14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지역현안 관련 선거공약 실천을 위한 서명을 받을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선거운동을 위하여 서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법 §58)

- P. 8 참조



## 2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법 §58, 법 §60)

## ●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②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함)
- ③ 선거권이 없는 자
- ④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 제외)은 선거운동 가능
- 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①3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직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근 임·직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 ⑥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⑦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⑧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 조직 및 구·시·군 조직 포함)의 대표자
  - ※ 외국인인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위 ④내지 ⑧의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 가능
- ⑨ 법 §38에 따른 선상부재자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



## 자주 묻는 질문

1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대통령선거의 지방분권 공약 채택 후보자 지지운동 및 낙선운동을 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2

공무원이나 언론인 등 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트위터나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여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전송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3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에 직업적 또는 단순한 모델로서 출연하여 촬영한 미성년자 사진이나 (예비)후보자가 과거에 미성년자와 함께 찍은 활동사진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4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선거구민에게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인사를 할 수 있나요?

☞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불가능합니다.

5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고문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6

선거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자(즉, 선거일 전에 피선거권이 회복되는 자)가 집행유예기간 중에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7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을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할 수 있나요?

☞ 선거일전 90일(9. 20)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선거사무관계자(선거 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 이제 선상(船上)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선상 부재자신고	선상 부재자투표
기 간	2012. 11. 21 ~ 11. 25	2012. 12. 11 ~ 12. 14
대 상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원양어선· 외항여객선·외항화물선·해외취업 선박의 선원	부재자신고인 명부에 등재된 선원
방 법	부재자신고서에 선장의 확인을 받아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고 신고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주소지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

※ 선상투표 관련 문의전화 : 02-507-7708

[www.nec.go.kr](http://www.nec.go.kr)

선장은 공정한 선상투표관리를 위하여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Part III

## 허용된 사전선거운동(선거일 제외)

1.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 36
2.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 36
3. 인터넷홈페이지 · 전자우편 및 SNS 이용 선거운동 / 41



## Part III. 허용된 사전선거운동(선거일 제외)

[원칙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아래와 같은 사전 선거운동은 허용됨]

1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법 §59제1호) ⇒ P.50 참조**

2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법 §59제2호)**

- **주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 **매체** :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
- **내용** :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가능
  - ※ 이 경우 '선거운동정보'를 명시하지 않아도 됨. 다만, (예비)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정보' 명시 등 법 §82의5를 준수하여야 함.
- **전송시 유의사항**
  - (예비)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정보, 그의 전화번호,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명시해야 함.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가능한 횟수는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신분을 합하여 5회 이내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의한 문자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전화번호는 전송일 전일까지 중앙선관위에 매회 1개를 신고해야 하며, 5회 범위 안에서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음.
    - ※ **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제외)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자동 동보통신으로 보지 아니함.

● 사례

[할 수 있는 행위]

- 선거일이 아닌때에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전송

[할 수 없는 행위]

-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허위사실공포 및 비방하는 행위
- 미성년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전송
- **선거일**에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전송
  - ※ 다만,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투표참여 홍보활동은 **가능**



자주 묻는 질문

1

(예비)후보자가 스마트 홈패드에 내장된 인터넷 전화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 전송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화기 자체프로그램을 이용·전송되므로 자동 동보통신 방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당내경선후보자인 예비후보자가 당내경선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할 경우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횟수에 포함 되나요?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의한 전송횟수(총 5회)에 포함됩니다.

3

당내 경선후보자가 정당이 정한 바에 따라 **당원인 경선선거인만**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경선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의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시간제한이 있나요?

☞ 시간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5 문자내용과 수신인을 PC에서 작성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문자를 PC에서 스마트폰으로 20건씩 나누어 전송하고, 이를 스마트폰의 자체 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자를 발송하는 행위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되나요?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됩니다.

6 (예비)후보자 명의로 등록된 휴대전화가 2개 이상인 경우 이를 모두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문자 전송의 경우 1개의 전화 번호를 전송일 전일까지 중앙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므로 2개의 휴대 전화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예비)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선관위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매회에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고,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문자 전송에 사용할 전화번호를 전송일 전일까지 중앙선관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2 이상의 신고는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 자동 동보통신이란?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통신방법을 말하므로, 2 이상의 자에게 동시에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다면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됨.

⇒ 예비후보자·후보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고,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후보자 신분을 합하여 **5회**를 넘을 수 없으며, 전송일 전일까지 중앙선관위에 **신고**해야 함.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이 아닌 경우?

-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이하인 경우
-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이하인 경우

8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SMS(Short Message Service)만 가능한가요? MMS(Multimedia Message Service)도 가능한가요?

☞ 문자메시지 전송시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의 전송은 제한되므로 MMS가 문자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9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 이용시 무료로 제공되는 수량 이외에 추가로 유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그 수신대상이 20인 이하라면 횟수에 제한없이 발송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유료 문자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20이상의 자에게 동시에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횟수에 포함되며, 이 경우 사전에 중앙선거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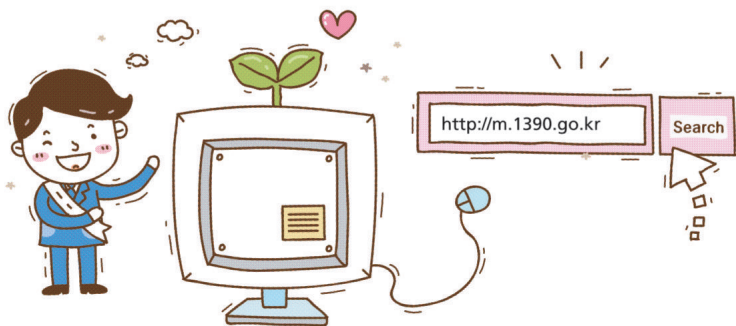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이 선거사무관계자에게 교육일시 및 사무일정 등을 안내하는 업무연락(지시) 내용의 문자를 자동 동보통신으로 전송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단순한 업무연락(지시) 내용의 문자는 자동 동보통신으로 전송하더라도 전송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1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 무료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문자를 전송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인터넷에서 누구에게나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명 이하에게 동시에 전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인터넷홈페이지·전자우편 및 SNS 이용 선거운동(법 §59제3호)

- **주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 **매체**
  - 인터넷홈페이지 : 포털, 개인 또는 단체의 홈페이지, 블로그 등
  - 전자우편 : 이메일(E-mail)
  - SNS
    -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 카카오톡, 마이피플, 네이버톡, 네이트온톡, 틱톡 등 모바일메신저
- **내용** : 상기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가능
  - ※ 이 경우 “선거운동정보”를 명시하지 않아도 됨. 다만,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선거 운동정보” 명시 등 법 §82의5를 준수하여야 함.
- **전송시 유의사항**
  - (예비)후보자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명시해야 함.
- **사례**
  - [할 수 있는 행위]
    -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정보 게시
    - 전자우편 및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전송
    - 트위터에 선거운동정보 게시 또는 리트윗(RT)
    - **선거일**에 SNS·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한 투표 인증샷 게시
      - ※ 다만,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게시하는 것은 **위반**됨.
  - [할 수 없는 행위]
    - 인터넷홈페이지·전자우편 및 SNS를 이용한 허위 사실공표 및 비방하는 행위
    - 후보자 사칭 등 성명 등을 허위로 표시하여 선거운동
    - 공무원 등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 **선거일**에 인터넷홈페이지·전자우편 및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전송
      - ※ 다만,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투표참여 홍보활동은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1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내에서 (예비)후보자의 취미, 관심, 개인사, 정견·정책 등을 촬영하여 인터넷사이트(유튜브, 유튜브, 유스트림, 올레온 에어 등)를 이용하여 생방송으로 송출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출연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2

인터넷 '손바닥tv'의 콘텐츠에 후보자가 직접 출연하는 것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쓴 서적이나 출연한 영화 소개와 같이 후보자의 음성, 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의 영상물 방영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일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할 수 없습니다.

3

선거사무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당해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 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시기에 관계없이(선거일 제외) 가능합니다.

4

팔로어가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들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시기에 관계없이(선거일 제외) 가능합니다.

5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나요?

☞ 성명 등 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불가능합니다.



6

선거사무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을 전송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요?

☞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7

선거사무원이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글을 전송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8

선거사무원이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예비) 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 시기에 관계없이(**선거일 제외**) **가능**합니다.

9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지지하는 입후보예정자의 로고송을 전송할 수 있나요?

☞ 시기에 관계없이(**선거일 제외**) **가능**합니다.

10

미성년자(19세 미만)인 고등학생이 자신의 트위터에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11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에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투표인증샷'을 올리면서 '○○○후보를 찍어주세요'의 글을 게시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한 '투표인증샷' 게시는 가능합니다.

12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이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사무관계자 외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수당을 제공하면서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도록 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매수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습니다.

1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금품 등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약속을 하는 내용을 트위터 등 SNS로 전송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매수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습니다.

14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팟캐스트에 제3자(선거구민, 유명인 등)를 출연시키고 그 출연내용을 MP3 파일이나 녹화물로 제작하여 팟캐스트에 게시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출연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반** 됩니다.

♣ **팟캐스트**란 애플 아이팟(애플사에서 만든 mp3 플레이어)과 방송을 결합해 만든 신조어로, 포터블 미디어 플레이어 사용자들에게 오디오 파일 또는 비디오 파일 형태로 뉴스나 드라마, 각종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15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게시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그 동영상을 트위터나 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할 수 있나요?

☞ 시기에 관계없이(**선거일 제외**) 가능합니다.

16

(예비)후보자가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메신저로 선거운동 동영상을 전송하는 경우 동영상 제작비용이 선거비용인가요?

☞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되며,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보전대상이나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17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메신저는 전자우편인가요? 문자인가요?

☞ 전자우편에 해당합니다.

♣ 전자우편이란 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

18

당내 경선후보자가 정당이 정한 바에 따라 당원인 경선선거인만을 대상으로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경선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19

(예비)후보자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 전송시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자우편 전송시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송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명시하거나, 수신자부담 전화를 설치한 경우 그 전화번호를 명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

(예비)후보자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일간신문(인터넷 신문 포함)에 보도된 기사를 복사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문자메시지는 문자가 아닌 화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전송할 수 없으며, (예비)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법 §82의5를 준수해야 합니다.

21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유가로 판매되는 자신의 저서를 파일로 게시하여 선거구민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나요?

☞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불가능**합니다. 다만, 저서의 표지 및 목차 등 일부내용을 홈페이지에 소개하는 정도라면 **가능**합니다.

22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특정 단체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사진·학력·경력 등의 내용을 게재할 수 있나요?

☞ 시기에 관계없이(**선거일 제외**) **가능**합니다. 다만,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23

선거사무원이 (예비)후보자의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운동용 명함, 선거공보'를 스캔하여 자신의 트위터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할 수 있나요?

☞ 시기에 관계없이(**선거일 제외**)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우편 전송대행 업체를 통한 전송은 (예비)후보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24

정치인 팬 카페 나 '동창회'가 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게시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팬 카페' 나 '동창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이므로 그 명의로 선거운동정보를 게시할 수 없습니다.



## 공직선거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수내용

(출처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 ● 최소수집 이용(개인정보보호법 §16)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외 다른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16조 필요 최소수집 원칙에 위배될 소지 있음.

공직선거법 상 개인정보 이용 관련 규정	공직선거법 조문	개인정보 항목
· 선거운동 (선거인명부 교부)	법 §46조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세대주명단 교부)	법 §60조의3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 (전자우편, 전화, 문자) ※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는 선관위 신고된 1개 번호로 5회 이하	법 §60조의3 법 §82조의4 법 §82조의5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문자메시지 전송시 준수사항(법 §82의5)

-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발송업체를 통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경우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 등을 명시해야 함.
-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 전송시 선관위에 신고된 1개 번호로 5회 이하(예비후보자로서 행한 횟수 포함)로 보내야 함.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함.

### ● 정보주체의 수집 출처 요청시 준수사항(개인정보보호법 §20)

-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수집출처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 ※ **고지해야 하는 내용**
    -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법 §37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 수집처에 관한 사실을 모르거나 알 수 없다고 밝히는 것만으로는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해야 함.

### ● 수집한 개인정보 파기 관련 준수사항(개인정보보호법 §21)

- 당초 수집 목적인 선거가 끝나면 수집한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해야 함.

### ● 정보주체의 열람 및 삭제 등 요청시 준수사항(법 §82의5)

- 공직선거법 §82의5에 따라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해서는 아니됨.
- 개인정보보호법 §35부터 §37에 따라 정보주체가 수신거부나 정보 삭제를 요청한 경우 지체없이 처리해 주어야 함.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개인정보보호법 §29)

- 수집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개인정보보호법 §30)

-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 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함.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공개(개인정보보호법 §31)

- 수집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총괄 책임지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후보자 또는 보좌관)를 지정·공개해야 함.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17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Part IV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1. 선거사무소 / 50
2. 어깨띠 · 표지물, 전화 / 51
3. 인쇄물 / 54



## Part IV.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 1 선거사무소(법 §60의3, 법 §61)

#### ● 선거사무소 설치

-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1개소만을 설치할 수 있음.  
※ 고정된 장소·시설에 두어야 하며, 식품접객영업소·공중위생영업소안에 둘 수 없음.
- 정당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중앙당사에 둘 수 있음.

#### ●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

- 수량 및 규격의 제한은 없음.
-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게재할 수 있음.
-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게시할 수 없음.





## 2

## 어깨띠 · 표지물, 전화(법 §60의3)

## 가. 어깨띠 · 표지물

## ● 예비후보자의 어깨띠

- 규 격 : 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
- 착용자 : 예비후보자만 착용 가능

## ●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 규 격 : 길이 100cm 너비 100cm 이내
- 착용자 : 예비후보자만 착용 가능



## 자주묻는 질문

## 1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나 그의 배우자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인은 어깨띠와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어깨띠와 표지물은 예비후보자만이 착용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중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옷(3만원 이내), 표찰, 수기, 마스크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2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선거사무관계자 및 지정된 1인)이 예비후보자와 함께 거리·상가·점포 등에서 선거구민에게 명함배부 및 지지호소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3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선거사무관계자 및 지정된 1인)이 예비후보자와 함께 아무 내용이 게재되지 않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점퍼를 입고 명함을 배부하거나 거리에서 인사를 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 나. 전화

###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 주체 : 예비후보자
- 내용 : 예비후보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자주 묻는 질문

1

정당선거사무소에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전화를 가설하고 전화홍보팀을 운영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2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예비후보자 기호○번 ○○○입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내용의 통화연결음을 사용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원 등)은 예비후보자를 홍보하는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 본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3

인쇄물(법 §60의3, 법 §60의4)

가. 명함(법 §60의3)

● 예비후보자의 명함

- 게재내용 : 성명 · 사진 · 전화번호 · 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 · 경력 등
- 규 격 : 길이 9cm 너비 5cm 이내
- 배부금지장소
  - 선박 · 정기여객자동차 · 열차 · 전동차 · 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지하철역구내 포함)
  - 병원 · 종교시설 · 극장의 안
- 배부주체
  -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 선거사무원 · 활동보조인
  -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중에서 지정한 각 1명(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해야 함)



자주물는 질문

1

정치인 팬클럽 대표자가 자신의 업무용 명함에 ‘○○○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지부장 홍길동’ 내용을 게재하여 의례적인 수교 방법으로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수 있나요?

☞ 통상적인 명함의 배부라기보다는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되어 **불가능**합니다.



**2**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의 업무용 명함에 예비후보자의 성명을 게재(예 : 제18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원 홍길동)할 수 있나요?

☞ 법상 선관위에 신고된 자(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활동보조인 등)는 상기의 업무용 명함을 제작하여 의례적인 방법으로 수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주차된 차량이나 아파트 우편함에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꽂아두는 방법으로 배부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직접 배부해야 합니다.

**4** 예비후보자가 마트, 시장, 찜질방, 주민센터, 공원 등에서 명함을 배부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장소인 경우에도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까지 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5**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사람 각 1명은 명함배부 및 지지호소가 가능한데 선관위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나, 예비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지정한 사람 각 1명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선거사무원이 단독으로 예비후보자의 명함배부 및 지지호소를 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선거사무원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명함배부 및 지지호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단독으로 명함배부 및 지지호소가 가능합니다. 후보자로 등록한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7

정당의 선거대책기구에 상근하는 자가 '정당로고, 선거명, 사무실 주소' 등이 게재된 업무용 명함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의례적인 수교방법을 벗어나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때에는 위반됩니다.



## 나. 예비후보자홍보물(법 §60의3)

### ● 작성수량·발송 등

- 작성수량·종수 : 2,013,368부 이내(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1종
- 규격·면수 :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16면 이내
- 발송
  - 기간 : 예비후보자 등록후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11. 24)까지
  - 방법 : 요금별납에 의한 우편발송
  - 신고 : 발송일전 2일까지 홍보물 2부 또는 그 전자적 파일을 첨부하여 중앙선관위에 신고하고, 발송일부터 2일 이내에 해당 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요금영수증 사본을 중앙선관위에 제출
    - ※ 수회에 걸쳐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려는 때에는 최초 신고시에 일괄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종발송일로부터 2일 이내에 우편요금영수증 사본을 일괄제출 가능
- 게재내용 및 작성근거 등 게재
  - 게재내용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
    - 예비후보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 방안을 게재
      - ※ 이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 게재 불가
  - 작성근거 등 게재
    - 앞면 : 명칭("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명, 예비후보자 성명, 소속 정당명(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은 무소속)
    - 뒷면 : 작성근거(이 예비후보자홍보물은 공직선거법 제60의3 제1항제4호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 인쇄사의 명칭·주소·전화번호



## 자주 묻는 질문

1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통수에 해당하는 세대주명단을 교부 받았으나 사용하지 않고, 배부지역을 다른 곳으로 하기 위해 세대주명단을 재교부 받을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통수에 해당하는 세대주명단을 이미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시 교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봉투 뒷면에 지역별 특성에 맞게 각각 다른 공약사항이나 홍보내용을 게재하여 발송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3

예비후보자홍보물을 횡수에 제한없이 발송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발송수량 범위(세대수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선거기간 개시일전 3일까지 횡수의 제한없이 우편발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송일전 2일까지 중앙선관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4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지역방송·신문사, 시민단체, 미용실, 공인 중개사 사무실, 기타 상가 등에 발송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의 범위(세대수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우편발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5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중앙일간지 또는 지방신문에 보도된 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게재할 수 있나요?

☞ 언론기관이 적법하게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그 출처(법에 따라 함께 공표해야 하는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최초 보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함)를 밝혀 게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6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아파트 우편함에 직접 투입하거나 선거사무소에 비치하여 방문객에게 배부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홍보물은 우편으로만 발송해야 합니다.

7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선거구내의 각 시·도별로 내용을 달리 제작하여 우편발송 할 수 있나요?

☞ 1종을 작성하여야 하므로 불가능합니다.

8

예비후보자가 아닌 경선후보자가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예비후보자홍보물, 어깨띠 및 표지물, 송·수화자 간 직접 전화 통화)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하므로 불가능합니다.

9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에 표지를 포함한 전체 면수의 100분의 50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 계획을 게재할 때 자신이 활동하는 사진을 게재할 수 있나요?

☞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과 관련이 있는 사진을 부수적으로 게재하는 것 이라면 가능합니다.

10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에 표지를 포함한 전체 면수의 100분의 50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 계획을 게재할 때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 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 다. 예비후보자공약집(법 §60의4)

### ● 종수·형태·배부방법 등

- 종수 및 수량 : 1종, 제한없음
- 면수 및 형태 : 제한없음, 공약집(도서형태로 발간된 것)
- 배부방법 :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 다만, 방문판매 금지
- 신고시기(방법) 및 신고처 : 발간 판매하려는 때 즉시(예비후보자공약집 2권 제출), 중앙선관위

### ● 게재내용 및 작성근거 등 게재

- 게재내용
  -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자원조달방안을 게재
  -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에 자신의 사진·성명·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수 없음.
    -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을 때 그 기호 게재 가능
  -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관한 사항은 게재 금지
- 작성근거 등 게재
  - 앞면 : 명칭("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명, 예비후보자 성명, 소속 정당명(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은 "무소속")
  - 맨 뒷면 : 작성근거(이 예비후보자공약집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4 제1항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 판매가격, 출판사(출판사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발간한 경우는 그 인쇄사)의 명칭·주소·전화번호



자주 묻는 질문

1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우편발송(또는 직접)을 요청한 사람에게 판매대금을 온라인으로 계좌입금받고 우편발송을 할 수 있나요?

☞ 서적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구입을 신청한 사람에게 우편발송하거나 직접 배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방문판매” 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를 포함하는 것임.

2

서적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다른 서적의 판매방법과 동일하게 서점이나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예비후보자공약집을 판매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서적 등 판매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예비후보자공약집의 주문이 가능한 배너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3

예비후보자공약집을 통상적인 가격보다 저렴하게 또는 비싸게 (가령, 1만원 상당을 1천원에 또는 1만원 상당을 10만원) 판매 할 수 있나요?

☞ 제작원가 이상의 통상적인 판매가격을 예비후보자공약집에 표시하여야 하며, 그 표시된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합니다.

4

예비후보자공약집을 거리 가판대 또는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판매 할 수 있나요?

☞ 통상적인 판매 방법으로 볼 수 없어 **불가능**합니다.

5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다량으로 구입한 사람이 이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부 할 수 있나요?

☞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불가능**합니다.

6

예비후보자공약집에 해당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는 경우 일반 단행본처럼 제3자의 추천사를 지면에 게재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만 **가능**합니다.

7

예비후보자(저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자신의 예비후보자공약집 내용을 그대로 게시(PDF 파일)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8

예비후보자공약집 발간비용이 선거비용에 포함되나요?

☞ 선거비용이 아닙니다.

9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한 경우 출판기념회 개최를 할 수 있나요?

☞ 선거일전 90일(9. 20)전에 통상적인 출판기념회 개최는 **가능**합니다.





# Part V

## 후보자의 선거운동

1. 선거운동기구 / 64
  2. 정당선거사무소 / 69
  3.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및 실비보상 / 72
    4. 인쇄물 / 77
    5. 현수막 / 83
    6. 어깨띠 등 소품 / 85
  7. 신문광고, 방송광고, 인터넷광고 / 88
    8. 방송연설, 경력방송 / 93
    9.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 96
    10. 대담·토론회 / 102
    11. 전화 / 107
- ※ 제18대 대통령선거 주요일정 / 110





## Part V. 후보자의 선거운동

### 1 선거운동기구(법 §61)

#### 가.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 ● 선거사무소 · 선거연락소 설치

-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선거사무소 ·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음.
  -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당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봄(별도의 신고 불필요).
- 선거운동기구는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두어야 하며, 식품 접객 영업소 또는 공중위생영업소 안에 둘 수 없음.

##### ● 선거운동기구의 홍보물 설치

- 간판 · 현판 · 현수막 설치 : 설치수량 및 규격의 제한은 없으나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 · 게시할 수 없으며, 애드벌룬 형태로는 제작할 수 없음.
  - ※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사진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게재할 수 없음.
- 선거벽보 · 선거공보 · 선거공약서 · 후보자의 사진 첨부 · 게시 가능
  - ※ 선거사무소에는 50매(부), 선거연락소에는 30매(부) 첨부 · 게시 가능
  - ※ 후보자의 사진은 선거벽보 규격의 2배 이내



## 자주 묻는 질문

1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가 있는 건물 입구에 후보자나 정당을 홍보할 수 있는 유니폼·모자·어깨띠를 착용한 마네킹을 설치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마네킹은 통상적인 간판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 중에 후보자의 지위에서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하는 경우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 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 설치에 부속되는 시설물로 보아 게시할 수 있습니다.

3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에 선거운동용 키폰 전화기를 설치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4

선거사무소에 선거운동과 관련이 없는 단순 잡무처리(차 대접, 청소 등)를 담당하는 노무자를 두고 인부임을 줄 수 있나요?

☞ 역무제공에 대한 통상적인 인건비 지출은 **가능**하며, 이 비용은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등 명목 여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인건비 등 금품제공은 **불가능**합니다.



5

선거연락소가 있는 건물의 옥상에 현수막 설치를 위한 게시대와 조명장치를 설치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이 경우 현수막게시대 설치비용은 보전대상 선거비용에 포함되나, 조명장치 설치비용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보전되지 아니합니다.

6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 30회선의 임시 전화를 가설하여 전화홍보팀을 둘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7

선거연락소에 LED전광판을 간판 등으로 설치하여 문자나 정당마크 등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표출되도록 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동영상을 표출하는 등 녹화기의 사용에 이르지 않아야 합니다.

8

선거연락소를 방문한 사람에게 커피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커피 자동판매기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면 됩니다.



## 나. 선거사무소 등의 개소식

### ● 선거사무소 등 개소식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합하여 1회만 개소식 개최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1** 개소식 행사의 일시·장소 등 단순 고지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제한된 범위의 지인 등에게 발송할 수 있나요?

☞ **가능**하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 전송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개소식에서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과 지역 주민들의 지지 및 응원하는 인터뷰내용의 동영상 상영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다만, 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소개(프로필, 인사말 등) 정도라면 가능합니다.

**3** 선거사무소 개소식 내용을 당해 후보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그 동영상을 트위터 등 SNS로 전송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4**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개소식에 초청할 수 있는 지인 등에게 초청장을 발송하여 개소식 행사를 고지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개소식 행사의 일정을 고지하면서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부가하면 안됩니다.



5

지인인 공무원(입후보예정자 아님)으로부터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개소식을 축하해주는 의례적인 범위의 화환을 받아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그 화환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게재되어서는 안됩니다.

6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개소식에서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나요?

☞ 1인당 3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주류 제외) 제공은 가능합니다.

7

개소식때 의례적인 범위에서 쌀화환을 받았는데, 쌀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쌀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후보자 본인이 직접 소비하거나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예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등에 의연금품으로 제공)으로 소비하여야 합니다.

8

선거연락소 개소식 장소에 선거운동에 활용하기 위한 선거구민의 연락처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고자 추천 서식”을 비치하여 참석자로부터 작성·제출받는 것이 가능하나요?

☞ 가능합니다.

## 2

## 정당선거사무소(법 §61의2)

## ●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 설치주체 : 정당(중앙당 및 시·도당)
- 설치단위 :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0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1개소
- 설치기간 : 선거일전 24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2012. 4. 23~2013. 1. 18)
- 간판·현판·현수막의 설치수량 및 규격 제한은 없으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성명·사진이나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및 반대하는 내용은 게재불가

## ● 정당선거사무소장 선임 등

- 당원중에서 소장 1인을 두어야 하며, 2인 이내의 유급사무 직원을 둘 수 있음.
- 정당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사무소의 수용공간 등을 고려하여 정당의 간부·당원, 선거사무관계자, 가족·친지·지인 등 의례적인 범위의 인사를 초청할 수 있으나, 정당선거사무소 외 별도의 장소에서 개소식 개최 불가

## ● 다과류(1인당 3천원 이내)의 음식물 제공

- 정당선거사무소의 개소식·간판게시식 또는 현판식에 참석한 정당의 간부·당원·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정당선거사무소 안에서 통상적인 범위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 제외)은 제공가능



## 자주 묻는 질문

1

정당의 후보자 공천확정에 따라 “○○당 대통령선거후보자로 △△△이 결정되었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를 정당선거사무소장 또는 당원협의회회장 명의로 소속당원들에게 전송할 수 있나요?

☞ 정당(정당선거사무소 포함)의 계획하에 당해 정당의 경비로 하는 것이라면 정당선거사무소장 또는 당원협의회회장 명의로 하더라도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아 **가능**합니다.

2

정당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에 소속정당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 및 당선기원 등의 내용을 게재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예 : 기호○번 ○○당)은 게재 **가능**하나,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게재 **불가능**합니다.

3

정당에서 급여를 받는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이나 유급사무직원이 소속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된 경우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나요?

☞ 산입하지 않습니다.

4

정당이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과 회계책임자에게 급여지급이 가능한가요? 만약 회계책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면 그 회계책임자를 정당선거사무소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수에 산입해야 하나요?

☞ 정당이 정당선거사무소에 두는 소장·회계책임자에게 통상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계책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유급사무직원수에 산입합니다.



5

중앙당 또는 시·도당이 개최하는 당원집회의 신고를 그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에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장의 명의로 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3

##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및 실비보상법 §62, 법 §63, 법 §135)

### 가.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법 §62, 법 §63)

#### ●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는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음.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시·도	구·시·군
102명 이내 (17시도×6배수)	당해 시·도안의 구·시·군수 (하나의 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함)이내 ※ 그 구·시·군수가 10미만인 때는 10인 이내	당해 구·시·군의 읍·면·동수 이내

- 장애인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으며, 이 활동보조인은 선거사무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같은 정당추천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된 경우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등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되는 경우에는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함.

#### ●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

-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활동보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교체 선임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의 수는 최초의 선임을 포함하여 **법정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를 넘을 수 없음.**



## 자주묻는 질문

1

예비후보자 신분시 선임·신고한 선거사무원을 선거일까지 계속 고용할 경우 재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 **재신고** 해야 합니다. 다만, 회계책임자는 재신고를 하지 않아도 선거 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봅니다.

2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이 단독으로 선거구민들에게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은 후보자와 **함께 다니면서** 명함을 배부해야 합니다.

3

정당부설 정책연구소 유급사무직원이나 국회 인턴보좌관,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을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할 경우 선거사무원 수에 산입되나요?

☞ 정당의 정책연구소 유급사무직원은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이므로 선거 사무원 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나, 국회 인턴보좌관이나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은 산입됩니다.



## 나. 수당과 실비보상(법 §135)

### ●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실비 지급

- 선관위에 선임·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실비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음.
-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지급기준(규칙 §59)

(단위 : 원)

구 분		수 당	실 비					
			일 비 (1일당)	식 비 (1일당)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 공 운 임	지 동 차 운 임
선거사무장	회 계 책임자 포 함	70,000	20,000	25,000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시도 선거연락소장		70,000	20,000	25,000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구시군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포함)		50,000	20,000	20,000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30,000	20,000	20,000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 숙박비는 지급하지 않음.

-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실비는 해당 회계책임자가 소속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 대한 수당·실비와 같은 금액을 지급함.  
※ 같은 사람이 회계책임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을 겸임하는 때에는 지급기준이 많은 금액에 해당하는 1인의 수당·실비만 지급.
- 정당,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 및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또는 연설원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법상 보전할 비용 중 그 기부행위에 사용된 비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함.





## 자주 묻는 질문

1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 근무하는 유급사무직원(보좌관·비서관·비서 제외)을 선거사무원이나 회계책임자로 선임할 경우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법에 따라 정해진 해당 신분의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이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되었을 경우 수당은 얼마까지 지급할 수 있는지요?

☞ 수당은 지급할 수 없고 실비(4만원 이내)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원을 겸한 때에도 실비(4만원 이내)만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선거사무관계자가 신용불량자인 경우 계좌입금이 불가능하므로 수당·실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사무관계자가 지정하는 가족 등 제3자의 예금계좌로 수당 등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4

선거연락소에서 선거사무원을 대신하여 문서작업 등 선거사무를 보조하는 사무직원을 고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나요?

☞ 선거운동과 관련되므로 **불가능**합니다.

5

국회의원후원회의 유급사무직원을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할 경우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6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운동을 하다가 미끄러져서 다쳤을 경우 후보자측에서 선거사무관계자의 치료비와 위로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다만, 후보자가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근거하여 그 배상책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7

후보자등록기간중에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불법기부행위는 부정선거입니다!

## 4

## 인쇄물(법 §64, 법 §65, 법 §66)

## 가. 선거벽보(법 §64)

## ● 선거벽보 작성 등

- 작성·제출 : 후보자(정당추천 후보자는 그 추천정당)가 후보자등록 마감일후 3일(11. 29)까지
- 규격·지질 : 길이 76cm 너비 52cm, 100/m<sup>2</sup> 이내의 종이
  - ※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음.

## ● 선거벽보의 내용 등

- 후보자만의 사진·성명·기호·소속정당명·경력·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
- 제출된 선거벽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음. 다만, 후보자는 선거벽보에 게재된 후보자의 성명·기호·소속 정당명과 경력·학력·학위·상벌이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거나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중앙선관위에 서면으로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선거벽보 제출마감일까지 그 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으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종전의 배열방법·색상·규격 등 변경불가

## ● 이의 제기 등

-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학위·상벌에 관한 거짓사실이 게재된 경우 중앙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 중앙선관위는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허위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함(관할선관위가 공고문 첨부)
  - ※ 선거벽보의 내용이 다른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등 법에 위반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선관위가 이를 고발하고 공고



## 자주 묻는 질문

1

후보자가 ‘하버드대학교 철학과 박사전(前) 과정이수 및 옥스퍼드 대학교 박사후(後) 과정이수’를 하고 실제로 ○○대학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경력사항으로 ‘박사전, 박사후 과정이수’를 선거 벽보 등에 게재 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2

‘○○대학교 정치학과 졸업’과 ‘△△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 수료’한 자가 후보자등록신청을 할 때 ‘△△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 수료’에 대한 학력증명서를 제출했다면 선거벽보에 학교를 선택적으로 게재하거나 모두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 정규학력이 있는 자는 학력을 ‘독학’ 또는 ‘무학’으로 기재할 수 없으나, ‘미기재’로는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선거벽보에 후보자가 어린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후보자 외의 다른 인물사진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4

선거벽보에 후보자의 사진 외에 배경사진(태극기, 우주선, 산, 새들이 비상하는 사진 등 인물사진 아님)을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후보자 외의 다른 인물사진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 나. 선거공보(법 §65)

### ● 책자형 및 전단형 선거공보 작성 등

구 분	책 자 형	전 단 형
작 성	후보자(정당추천 후보자는 그 추천정당)가 작성	
제 출	후보자등록 마감일후 6일 (12. 2) 까지	후보자등록 마감일후 10일 (12. 6) 까지
규 격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길이 38cm 너비 27cm 이내 또는 길이 54cm 너비 19cm 이내
매 수	16면 이내	1매

※ 후보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으며,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

### ●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작성

- 책자형 선거공보의 둘째 면에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을 게재하여야 함.
-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12. 2)까지 제출하여야 함.
  - ※ 정당한 사유없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점자형 제외)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
- 책자형 선거공보의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 자료만을 게재**하여야 하며, 점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도 그 내용이 책자형과 동일하여야 함.
-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 제외)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둘째 면이 아닌 다른 면(둘째 면이 부족하여 셋째 면에 연이어 게재한 경우 제외)에 게재하거나, 둘째 면에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 외의 다른 내용을 게재하거나, 규격·제출기한을 위반한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함.



## 자주 묻는 질문

1

선거벽보에는 타인의 사진 게재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선거공보에도 타인의 사진을 게재할 수 없나요?

☞ 선거공보에는 타인과 악수하는 사진 등 활동사진은 게재 **가능**합니다.

2

선거공보에 고인(故人)이 된 전직 대통령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가능**합니다.

3

책자형선거공보를 작성 및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책자형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선거공보 제출기한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됩니다.

4

시각장애인에게 발송하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5

무소속 후보자가 선거공보에 정당활동 경력 및 과거 정당의 국회의원 등과 함께 찍었던 사진을 게재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다. 선거공약서(법 §66)

### ● 종수·규격 등

- 종수·규격·면수 : 1종,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32면 이내
- 수량 :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

### ● 게재내용 및 작성근거 등 게재

- 게재내용
  -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
  -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은 게재 금지
  - 이 경우 후보자의 성명·기호와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외의 후보자의 사진·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작성 면수중 1면 이내에서 게재할 수 있음.
- 작성근거 등 게재
  - 앞면 : 명칭("선거공약서"), 선거명, 후보자 성명, 소속 정당명(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은 "무소속")을 한글로 게재
  - 뒷면 : 작성근거(이 선거공약서는 공직선거법 제66조에 따른 것입니다). 인쇄소의 명칭·주소·전화번호

### ● 배부할 수 있는 사람 및 신고 등

- 배부할 수 있는 사람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 우편발송(점자형 선거공보 제외), 호별방문, 살포(특정 장소에 비치하는 방법 포함)의 방법으로 배부 금지
- 서면 신고 : 배부하고자 하는 때는 배부일 전일까지 2부를 첨부하여 중앙선관위에 신고



- 제출후 배부 : 배부 전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위에 각 2부 제출후 배부
- 선거공약서 공개  
중앙선거관위는 선거공약서를 선거관위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으며, 당선인은 그 임기만료일 까지 선거관위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관위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음.



### 자주 묻는 질문

1 선거운동을 위하여 증강현실(AR기술)이 적용된 마커와 바코드를 선거공약서에 인쇄하여 후보자의 약력·경력 및 그 밖에 선거공약 등을 스마트폰을 통해 살펴볼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2 선거공약서를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는 추천정당을 말함)가 아닌 자가 이를 작성하여 배부·판매할 수 있나요?

☞ 후보자만이 선거공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불가능합니다.

3 선거공약서를 선거사무장 등이 아닌 일반 핵심당원이 후보자로부터 배부받아 이웃 주민에게 배부를 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 5

## 현수막(법 §67)

## ● 주체·규격·수량 등

- 게시주체 : 후보자(정당추천 후보자는 추천정당)
- 규격·재질 : 10㎡ 이내로 천으로 제작
- 게시수량 : 읍·면·동마다 1매
- 게재사항 :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소속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허위사실, 후보자비방 제외)

## ● 게시방법 등

- 관할 구·시·군선거위가 교부하는 표지를 첨부해야 함.  
※ 교체시에는 표지를 떼어 새로운 현수막에 첨부하여 게시
- 일정한 장소·시설에 고정하여 게시해야 하며, 애드벌룬·네온사인·형광 그 밖의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게시할 수 없음.
-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이나 「도로교통법」 §2에 따른 신호기 또는 안전 표지를 가리거나 도로를 가로질러 게시할 수 없음.
- 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게시할 수 없음.



## 자주묻는 질문

## 1

현수막을 천이 아닌 비닐이나 다른 재질로 제작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10㎡ 이내로 반드시 천으로 제작해야 하며, 애드벌룬·네온사인·형광 그 밖의 전광에 의한 표시방법으로 게시할 수 없습니다.



## 2 현수막 제작 후 선관위에서 검인을 받지 않고 직접 게시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선관위에서 발급하는 표지를 사전에 교부받아 현수막에 첨부하여 게시해야 합니다.

### ♣ 투표소가 설치된 장소에 현수막 게시

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으로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에 현수막을 게시해 둔 장소가 투표소로 지정된 경우에는 현수막을 선거일 전일까지 다른 장소에 옮겨 게시해야 함.

## 3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을 특정 동에 2매 이상을 게시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법에서는 읍·면·동마다 1매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각 읍·면·동 관할구역 내에 1매씩 게시해야 하며 특정 지역에 일괄 게시 할 수 없습니다.

## 4 현수막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교체가 가능한지와 선관위에 교체신고를 해야 하나요?

☞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교체 가능하며 선관위에 별도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훼손으로 현수막을 교체하고자 하는 때는 종전의 표지를 떼어 새로운 현수막에 첨부하여 게시할 수 있습니다.

## 5 현수막에 자신에 대한 유리한 내용의 신문 기사를 복사하여 게재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허위사실이나 후보자비방에 이르는 내용은 안됩니다.

## 6

## 어깨띠 등 소품(법 §68)

## ● 소품을 사용할 수 있는 자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 ※ 자원봉사자는 소품 등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기간 : 선거운동기간중(2012. 11. 27~12. 18)
  - ※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예비후보자만 어깨띠·표지물 착용가능

## ● 종류·규격

종 류	규 격
어깨띠	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
윗옷(上衣)	선거사무원 수당 기준금액(3만원) 이내
마스코트, 표찰·수기 그 밖의 소품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

- ※ 위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중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게재사항 :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소속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허위사실, 후보자비방 제외)



## 자주 묻는 질문

1

1명의 선거사무원이 티셔츠·점퍼 등을 각각 3만원 이내의 가격으로 착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티셔츠와 점퍼를 동시에 동일한 선거사무원이 착용할 경우 티셔츠와 점퍼가격을 합하여 3만원 이내여야 하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각각 3만원 이내의 선거운동용 옷을 동시에 입고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2

선거운동용 옷을 여러종류로 제작하여 선거사무원들이 요일별로 옷을 바꿔 입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선거비용제한액 범위안에서 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3

선거사무원들이 후보자의 기호·성명·홍보문구 등이 표출되는 LED 전자홍보판을 몸에 지니고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나요?

☞ 선거운동기간중에 선거사무원이 LED 홍보판을 몸에 부착하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LED 홍보판을 선거운동용 소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동영상 표출 등 녹화기의 사용에 이르지 않아야 합니다.

4

선거사무원이 방수천, 섬유, 고무류 기타 재질로 사람 모양, 지역 상징물, 기타 동물 모양 등의 마스크트(기호·성명·정당명·캐치프레이즈 등 게재)를 입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허위사실이나 후보자비방에 이르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5

선거사무원이 태블릿PC(갤럭시탭, 아이패드 등)를 이용하여 선거 구민에게 후보자의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정보를 보여주면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나요?

☞ 소품으로 이용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동영상 표출 등 녹화기의 사용에 이르지 않아야 합니다.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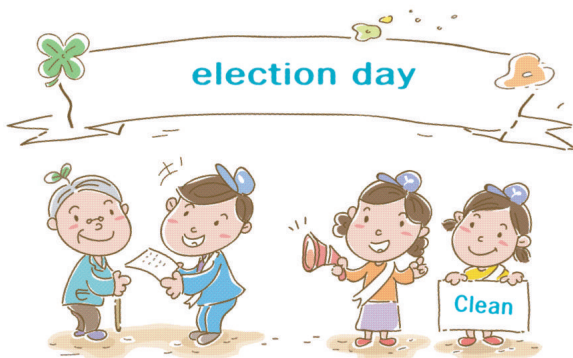
선거사무원이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선거벽보·선거공보, 여론조사결과 내용, 투표용지 모형 등이 게재된 피켓을 손에 들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자원봉사자는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7

후보자나 배우자 또는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원이 어깨띠나 소품 등을 착용하여 시내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명함배부 및 지지 호소 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7

신문광고(법 §69), 방송광고(법 §70), 인터넷광고(법 §82의7)

가. 신문광고(법 §69)

- 광고주체 : 후보자(정당추천 후보자는 그 추천정당)
  - ※ 신문광고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인증서를 교부받아 광고게재
- 광고기간 :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2012. 11. 27~12. 17)
- 광고규격 : 색도 및 규격에 대한 제한 없음
- 광고횟수 : 총 70회 이내
  - ※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보며, 같은 날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이 배달되는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발행일자가 표시되었더라도 1회로 봄.
- 광고내용 :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 모금,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자주묻는 질문

1

중앙당의 대표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신문 또는 방송광고에 출연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2

신문광고를 같은 날짜에 발행하는 동일 신문의 여러 면에 걸쳐 게재할 수 있나요?

☞ 광고문이 단절됨이 없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라면 1회로 보아 가능합니다.

### 3 무가지신문에도 신문광고를 할 수 있나요?

☞ 무가지신문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이라면 **가능**합니다.

### 4 향우회, 동문회, 각종 봉사단체 등이 후보자를 위하여 신문광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 나. 방송광고(법 §70)

- 광고주체 : 후보자(정당추천 후보자는 그 추천정당)
- 광고기간 : 선거운동기간중(2012. 11. 27~12. 18)
- 방송시설 :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방송법에 의한 방송 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 포함)을 말함]
- 광고횟수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30회 이내
- 광고시간 : 1회 1분 이내
  - ※ 횟수계산에는 재방송을 포함하며, 하나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 시설의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봄.
- 광고내용 :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 실시통보 : 방송시설 경영자는 방송광고의 일시와 내용 등을 중앙 선관위에 통보해야 함.



### 자주묻는 질문

1

종합편성채널(JTBC, MBN, TV조선, 채널A)에 방송광고 및 방송연설을 할 수 있나요?

☞ 법 §70의 방송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불가능**합니다.

2

IPTV(쿠, 하나포스)를 이용한 방송광고가 가능하나요?

☞ 법 §70의 방송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능**합니다.

3

방송광고를 함에 있어서 후보자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방영할 수 있나요?

☞ 초상권 침해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가능**합니다.



## 다. 인터넷광고(법 §82의7)

### ● 주체 및 광고방법

- 후보자(정당추천 후보자는 그 추천정당)는 선거운동기간중(2012. 11. 27~ 12. 18)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음.
- 인터넷광고에는 광고주명 및 선거광고 라고 표시해야 함.

### ● 인터넷광고의 규격 등

- 인터넷광고의 형식·크기(용량)·규격은 제한없음.
- 광고비용은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음.



### 자주물는 질문

1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중에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내용이 연동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광고에는 광고주명과 선거광고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인터넷 손바닥TV가 선거운동기간중에 후보자의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인터넷광고는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 할 수 있습니다.

3

다음·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광고는 일반유권자도 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인터넷광고는 무소속후보자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만이 **가능**합니다.



4

인터넷광고는 배너형태의 광고만 할 수 있나요?

☞ 인터넷광고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배너광고, 동영상광고, 검색 광고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5

인터넷광고의 횟수나 게재방법 등에 제한이 있나요?

☞ 횟수 또는 게재방법에 있어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6

인터넷광고를 하고자 할 때 신고사항은 무엇인가요?

☞ 인터넷광고는 선관위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7

후보자가 트위터나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인터넷광고를 게시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트위터·페이스북 홈페이지는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는 인터넷언론사가 아닙니다.

8

후보자가 아파트 승강기 내부에 설치된 모니터를 이용하여 후보자를 알리는 광고를 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9

인터넷광고는 반드시 등록된 인터넷언론사에 해야 하나요?

☞ 반드시 등록된 인터넷언론사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일간신문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등록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상 인터넷언론사에 해당됩니다.

## 8

## 방송연설(법 §71), 경력방송(법 §73)

## 가.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법 §71)

## ● 방송연설 기간 및 횟수 등

- 연설기간 : 선거운동기간중(2012. 11. 27~12. 18)
- 연설 횟수 등

연 설 자	연설시간(1회)	매체별 연설횟수
후 보 자	20분 이내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11회
연 설 원		

※ 방송횟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재방송은 포함하되,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을 선정하여 당해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봄.

## ● 방송연설 내용 등

- 연설내용 :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 텔레비전 방송연설의 경우 후보자가 연설하는 모습, 후보자의 성명·기호·소속정당명(해당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 포함)·경력, 연설요지 및 통계자료 외의 다른 내용은 방영불가
  - ※ 방송연설을 녹화해 방송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방송시설을 이용해야 함.
  - 다만, 다른 방송사에서 제작해 방송되었던 방송연설을 방영하는 것은 가능
-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은 방영가능
- 방송연설 신청서 제출
 

후보자가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할 방송 시설명, 이용일시, 연설을 할 사람의 성명, 소요시간, 이용방법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 까지 중앙선관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 연설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선거기간중 같은 방송시간대에 방송하는 상업·문화 기타 각종 방송요금중 최저요금을 적용함.



## 자주 묻는 질문

1

텔레비전 방송연설중 후보자 기호·성명 이외의 방송연설 내용을 요약하여 자막으로 방송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자막의 크기·색상 등 그래픽 효과, 글자수, 노출시간등에 제한이 있나요?

☞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막의 크기·색상·노출시간 또는 글자수에 관하여는 법상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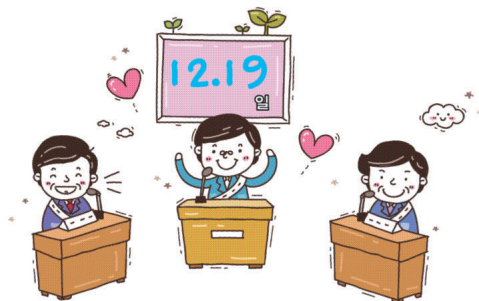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실시할 때 앞뒤 시그널 음악 또는 배경음악 (클래식 음악 등 가사가 없는 일반 경음악) 등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3

방송연설시 후보자의 활동사진이나 춤추는 모습을 방영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후보자가 연설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연설을 하면서 춤을 추는 것은 가능하나, 연설과 무관하게 다른 장소에서 춤을 추는 영상이나 활동 사진 등을 방영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나. 경력방송(법 §73)

### ● 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의무사항)

- 방송기간 : 선거운동기간중(2012. 11. 27~12. 18)
- 방송횟수 : 매회 2분 이내의 범위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로 각 8회 이상
- 방송내용 :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연령·소속정당명(무소속은 “무소속” 이라 표시) 및 직업 기타 주요한 경력
  - ※ 경력방송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방송 가능
- 비용부담 : 한국방송공사

### ● 경력방송 원고의 작성

- 원고 작성·제출 :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11. 26)까지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2부를 작성하여 중앙선관위에 제출
  - ※ 후보자가 경력방송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선관위가 후보자 등록신청서에 의하여 경력방송원고를 작성함. 이 경우 후보자가 사진 미제출시 그 후보자는 사진의 방영을 포기한 것으로 봄.

#### [텔레비전 방송용]

- 100자 이내(구두점 기타 문장부호 포함)로 작성하되, 원고 중 직업(1종), 학력(1종), 경력(2종), 각 행에 기재하는 문자의 수는 12자 이내로 작성
- 사진(5cm×7cm)은 최근 3개월이내 탈모상반신으로 촬영된 후보자만의 천연색사진
  - ※ 원고의 자수가 법정 제한 자수를 넘거나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넘는 부분과 사진은 방영하지 아니함.

#### [라디오 방송용]

- 300자 이내에서 텔레비전용 형태와 동일하게 작성
  - ※ 원고의 자수가 법정 제한 자수를 넘는 때에는 넘는 부분은 방송하지 아니함.



9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법 §79, 법 §80, 법 §102)

● 공개장소 연설·대담의 개념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 등”이라 함)과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 연설 및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답하는 것을 말함.

● 연설·대담 금지장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
  - ※ 다만, 공원·문화원·시장·운동장·주민회관·체육관·도로변·광장 또는 학교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연설·대담 가능
-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역구내
  - ※ 비정기여객자동차인 관광버스 안에서는 연설·대담 가능
-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

● 연설·대담 가능기간 : 선거운동기간중(2012. 11. 27~12. 18)

- 연설·대담 등 선거운동 가능시간
  - 연설·대담 : 오전 7시 ~ 오후 10시
  - 녹음·녹화기 : 오전 7시 ~ 오후 9시
  - 휴대용확성장치 : 오전 6시 ~ 오후 11시

● 연설·대담의 내용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와 확장장치 등

선거별		자동차	확장장치		녹화기 화면규격	
			차량부착	휴대용		
대통령 선거	후보자	1대	1조	1조	제한없음	
	연락소	시도	1대	1조	1조	10㎡이내
		구시군	1대	1조	1조	5㎡이내

※ 자동차와 확장장치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수량 범위 안에서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및 후보자 사진을 붙일 수 있음.



### 자주묻는 질문



#### 연설·대담 관련 용어정리

- ‘후보자 등’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때’ : ‘후보자 등’이 실제로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후보자 등’이 연설·대담을 하기 위하여 연설·대담차량을 타고 이동하거나 연설·대담차량 주위에서 준비 또는 대기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

1

‘후보자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연설·대담장소에 그를 지정한 ‘후보자 등’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공개장소 연설·대담장소에 그를 지정한 ‘후보자 등’이 없는 때에도 연설·대담이 가능합니다.





2

대통령선거에 있어 공개장소에서 후보자의 연설·대담 내용을 무궁화 인공위성의 “다지점 중계통신망(‘sky life’ 위성방송 과는 무관함)”을 이용하여 후보자용 연설·대담차량과 시·도 및 구·시·군 선거연락소마다 사용하는 연설·대담차량의 녹음기·녹화기를 통하여 동시에 생중계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 가능합니다.

3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후보자 등’ 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일반인도 선임이 가능한가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후보자 등’ 이 지정한 사람의 인원수 제한이나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4

선거사무관계자 외에 ‘후보자 등’ 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한 사람에게 연설대가로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법에 따라 수당·실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연설대가로 사례금을 주는 경우에는 법에 **위반**됩니다.

5

선거사무원이 연설·대담 장면을 촬영하여 트위터나 페이스북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6

정당의 대표자·국회의원·연예인 등이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녹화하여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녹화기를 이용하여 방영할 수 있나요?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즉, ‘후보자 등’) 이 아닌 자가 출연하여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은 녹화기로 방영이 **불가능**합니다.



7

‘후보자 등’이 연설·대담차량 주위에서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준비하고 있는 때에 녹음·녹화기를 방영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8

녹음기 또는 녹화기의 음량이 작은 경우 차량부착용 확장장치나 휴대용 확장장치 외의 별도의 확장장치를 녹음기·녹화기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 녹음기·녹화기에 별도의 확장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9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사용하는 녹화기에 후보자를 홍보하는 홍보물 첨부이 가능한가요?

☞ 녹화기에 홍보물을 첨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0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이동중에 휴대용 확장장치를 사용한 연설·대담이 가능한가요?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즉, ‘후보자 등’)이 탑승하고 있는 때에는 가능합니다.

11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후보자의 로고송 외에 일반 대중가요의 방송이 가능한가요?

☞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가능합니다.

12

이미 설치되어 있는 녹화기 외에 연설·대담차량에 LED 홍보판을 설치하여 홍보문자를 표출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동영상상을 표출하는 등 녹화기의 사용에 이르지 않아야 합니다.



13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한 차량의 크기나 톤 수의 제한이 있나요?

☞ 법상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14

선거사무원이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일정을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로 전송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의한 방법으로 전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5

연설·대담시 상대 후보자의 전과사실 또는 재판(수사) 진행중인 상대 후보자에 대한 언론보도내용 등을 녹화기로 방영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16

연설·대담이 금지된 시간에 녹음기·녹화기 및 확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홍보시설물이 부착된 연설·대담차량을 지역을 순회하면서 운행만 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17

선거연락소의 연설·대담차량을 관할구역 밖으로 이동하여 선거 운동에 이용할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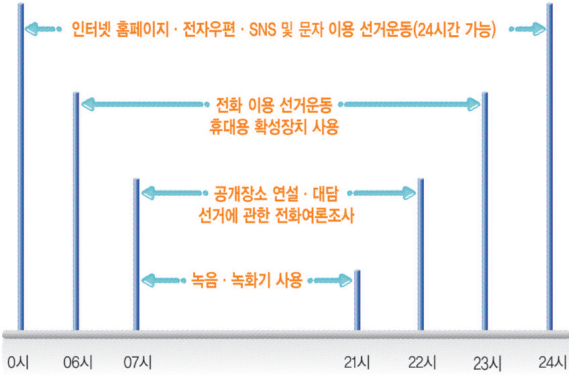
☞ **불가능**합니다. 선거연락소의 연설·대담차량은 당해 선거연락소의 관할구역 안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18

유명 방송인이나 교수 등이 연설·대담차량에 올라와서 연설·대담등 지지호소를 할 수 있나요?

☞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된 자이거나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선거운동방법별 선거운동 가능시간





10

대담 · 토론회(법 §81, 법 §82, 법 §82의2)

가.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 · 토론회(법 §81)

● 대담 · 토론의 개념

- 대담이라 함은 1인의 후보자가 소속정당의 정강 ·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에 관하여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함.
- 토론이라 함은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사회자의 주관하에 소속 정당의 정강 ·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사회자를 통하여 질문 · 답변하는 것을 말함.

- **초청주체** : 단체(법 §87①1~6 및 법 §10①6 노동조합과 단체 제외)
- **개최기간** : 선거운동기간중(2012. 11. 27~12. 18)
- **개최장소** : 옥내
- **초청대상** : 후보자 또는 대담 · 토론자



자주묻는 질문

1

언론기관이 아닌 단체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복지 현안에 대하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 · 토론회는 선거운동기간에만 가능하므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개최할 수 없습니다.

2

대학교 학생회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초청하여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 등 초청 대담 · 토론회를 개최 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3 공무원노조가 후보자 등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공무원노조는 그 구성원이 공무원으로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이므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 4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지회 포함)가 선거운동기간중에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 5 대학교 주최로 후보자를 초청하여 각 분야에 대한 정책을 듣고 참석한 학생들로부터 질문·답변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대학교는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단체 (법 §87①)

- 국가·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①3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염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후보자 또는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그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그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



## 나.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법 §82)

### ●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전자·기타간행물 발행자는 제외),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중(2012. 11. 27~12. 18)에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정한 대담·토론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음.



### 자주 묻는 질문

1

인터넷언론사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예비후보자 포함) 또는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 게시도 가능합니다.

2

토마토 TV(케이블방송)의 자회사인 “뉴스토마토”가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3

인터넷 손바닥 TV 주체로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4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진행중에 대담·토론회에 참석한 후보자를 지지·격려하거나 응원하는 선거구민의 메시지를 방송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법상 금지되고 있는 방송시설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5

「방송법」에 의한 위성방송사업자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후보자를 포함)을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보도하거나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6

언론기관이 개최하는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종합유선 방송이나 중계유선방송 등이 중계방송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포함)·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습니다.

7

언론기관이 당선가능성이 있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 특정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만을 유리하게 하는 방법이 아닌 한 당선가능성이 있는 사람만을 초청하여 개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8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진행중에 사전에 제작한 후보자 인터뷰 영상을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여 방송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법 §82의2)

### ● 초청대상 후보자(대통령선거)

- ①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 ② 직전 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 의원 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 ③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10. 28)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11. 26)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이상인 후보자



### 자주 묻는 질문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대담·토론회 초청을 받은 후보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 **참석**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게 될 경우에는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계방송을 시작하는 때 불참한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함)·기호·성명과 불참 사실을 방송합니다.

2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방송 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인터넷언론사가 중계방송을 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11 전화(법 §82의4)

- 주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 기간 : 선거운동기간중(2012. 11. 27~12. 18)
- 방법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



### 자주물는 질문

1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중에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자신의 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한편, 후보자가 로고송을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율적 판단에 의하여 자신의 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중에 로고송 전화 통화연결음 사용시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해야 하나요?

☞ 선거운동정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중 언제든지 가능한가요?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중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가능합니다.

4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일반전화의 통화연결음을 연예인의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연기자○○○입니다. △△△후보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으로 할 수 있나요?

☞ 그 연기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능**합니다.

5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가정집, 기타 사무실에 기존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에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가 아닌 기존의 사무소·가정집 등에 새로이 전화를 가설·증설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6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이 전화홍보 회사에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의뢰하고 그 회사가 전화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대행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유사기관 설치·운영에 해당됩니다.

7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정당선거사무소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전화기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선거사무소에 새로이 전화를 가설하거나 증설하여서는 안됩니다.





## 제18대 대통령선거 주요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준일	관계법조
'12. 3. 15 까지	목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법4, §60의2① 규32①②
4. 13까지	금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령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규351①② 규326의2③
4. 23부터	월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일전 240일부터	법60의2①
7. 22부터 10. 20까지	일 토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법218의4,5,6 규3136의4,5
9. 20까지	목	각급선거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 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9. 20부터 12. 19까지	목 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9. 20까지	목	인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53①
10. 20부터 12. 19까지	토 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10. 31부터 11. 9까지	수 금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법218의8,9 규3136의8,9
11. 19	월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	선거일전 30일에	법218의13①
11. 21부터 11. 25까지	수 일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 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8일부터 5일 이내	법37, 규110 법38, 규111
11. 25부터 11. 26까지	일 월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오후6시까지)	선거일전 24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11. 27부터	화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	법33③
11. 29까지	목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법64②, 규29④
12. 2까지	일	선거벽보 첨부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12. 5까지	수	책자형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까지	법65⑤, 규30④
12. 5부터 12. 10까지	수 월	책자형선거공보 발송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법65⑤
12. 5부터 12. 10까지	수 월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8시~오후5시)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중 6일 이내	법218의7①⑥ 규3136의15
12. 6까지	목	전단형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0일까지	법65⑤, 규30④
12. 10까지	월	부재자 투표용지(책자형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발송 및 선상투표용지 전송	선거일전 9일까지	법65⑤, §154①⑤, §154의2①, 규377
12. 10에	월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9일에	법54④①
12. 11부터 12. 14까지	화 금	선상부재자투표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 기간중 선정이 정한 일시	법158의2①
12. 12까지	수	투표안내문(전단형 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⑤, §153①②, 규376
12. 13부터 12. 14까지	목 금	부재자투표소 투표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법148①, §155②, §158
12. 19	수	투 표 (오전6시~오후6시까지)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선 거 일	법 10장 법 11장
'13. 2. 27까지	수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70일 이내	법122의2① 규351의3②



부록  
OX로 알아보는  
선거운동방법



## 투표참여 권유행위



### 괜찮아요~~ YES

- 지지·반대하는 내용없이 정당·후보자 명의 권유내용
- 투표참여 권유매체에 정당·후보자명 게재
- 현수막에 정당의 명칭·로고 게재
-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를 선전하는 투표참여 권유피켓 등을 선거사무관계자가 사용
-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100M 밖에서 투표참여 활동
- 선거일에 투표참여 문자메시지 전송
- 개인·단체가 자신의 명의로 투표참여 활동

## 당내경선 선거운동



### 괜찮아요~~ YES

- 경선후보자인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 선거운동방법으로 경선운동
- 경선일에 어깨띠 착용하고 경선운동
- 정치적 현안을 홍보하며 부수적으로 선거인단 모집 현수막 게시
- 당헌·당규에 따른 선거인단 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선거인단 모집
- 정당이 경선운동을 위해 합동연설회·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
- 경선운동기구에서 경선사무 종사자에게 통상적인 식사류 제공



## 안돼요~~ NO

- 정당·후보자 명의를 부각·선전한 권유내용
- 투표참여 권유매체에 후보자(정당) 사진·기호 게재
- 현수막에 정당을 선전하는 문구게재
- 자원봉사자가 후보자 등 선전내용 피켓 등 사용
-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100M안에서 투표참여 활동
- 선거일에 지지·반대내용 게시 문자메시지 전송
- 개인·단체가 자신의 경비로 후보자 명칭을 표기하여 활동



## 안돼요~~ NO

- 예비후보자가 아닌 경선후보자가 예비후보 선거운동 방법으로 경선운동
- 경선일에 투표소 입구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호소
- 경선선거인단 모집 거리 현수막 게시
- 경선선거인단 모집을 위해 거리에서 가입 권유·설득 및 선거인단 모집 신청서 배부
- 언론기관이 중계방송 비용을 받고 경선운동 방송
- 경선사무종사자에게 수당 지급

## 선거운동 개관



### 괜찮아요~~ YES

- 후보자 미추천 정당이 기자회견으로 다른 정당 후보 지지
-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 추천 받으면서 선거구민에게 경력 및 공적등 구두 소개
- 예비후보자가 단체의 설립목적 범위내에서 선거와 무관한 강연실시
- 선거기간 전에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는 강연회 개최
- (예비)후보자를 소재로 하는 소설·평전 등 발간
- (예비)후보자가 선거기간 임박한 시기(선거기간 포함)에 저서 출간
- 공무원노조가 설립목적과 관련있는 객관적인 내용을 보도자료 또는 당체 단체 홈페이지 게시
-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원 선임할 자 대상 선거법 설명회 개최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정당의 후보추천에 관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 허용된 사전선거운동(선거일 제외)



### 괜찮아요~~ YES

#### 문자메시지

- (예비)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으로 선거운동 문자 전송(5회 범위이내)
-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문자를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전송

#### 인터넷홈페이지·전자우편 및 SNS

-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인터넷홈페이지 및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전송
- SNS를 이용하여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내용 전송
- 트위터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 리트윗(RT)
-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시 '선거운동정보' 미표기
- SNS를 이용하여 자원봉사자 모집공고
- 카카오톡의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선거운동정보 게재
- (예비)후보자가 인터넷홈페이지를 팟캐스트 방식으로 운영
- (예비)후보자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 전송
- (예비)후보자 홈페이지에 유가로 판매되는 자신의 저서 일부내용 소개
- 선거일 당일에 SNS를 이용하여 단순한 '투표인증상' 전송





## 안돼요~~ NO

- 후보 미추천 정당이 제한·금지하는 방법으로 다른 정당·후보 지지
-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 추천 받으면서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 인쇄물 배부
- 정견발표회등 지지·선전
- 선거기간 전에 정당의 정책 등을 알리는 강연회에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정견을 홍보
-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 및 그의 선거공약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저서 발간
- 선거일전 90일부터 (예비)후보자 관련 저서의 광고 및 출판기념회 개최
- 공무원 노조가 특정후보자 지지·반대의사 표시 및 유권자 판단자료 제공 등 선거운동
- 선거구민 대상 선거법 설명회 개최
- 통리반장이 선거사무원과 동행하면서 선거구민에게 '잘 부탁한다'고 인사하는 행위
- 인쇄물을 배부하며 정당의 후보자 반대



## 안돼요~~ NO

### 문자메시지

- (예비)후보자 외에 일반 유권자가 자동 동보통신으로 선거운동 문자 전송
- 선거일 당일에 문자를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전송

### 인터넷홈페이지·전자우편 및 SNS

- 선거일 당일에 인터넷 홈페이지 및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전송
- (예비)후보자가 타인의 명의로 카카오톡을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전송
- 미성년자의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전송
- 선거일 당일에 '투표인증샷' 올리면서 선거운동정보 전송
- 선거사무관계좌 외에 아르바이트생 고용하여 수당을 제공하면서 선거운동 지지
- 팟캐스트에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가 출연하여 선거운동
- (예비)후보자 외에 일반 유권자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 전송
- (예비)후보자 홈페이지에 유가로 판매되는 자신의 저서 전체파일 게시
- SNS를 이용한 허위사실 및 후보자비방 내용 유포
- '팬카페' 나 '동창회'가 단체 및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정보 전송



## 관참아요~~ YES

### 어깨띠 및 표지물

- 예비후보자 본인이 규격범위내의 특이 표지물을 착용하고 명함배부 및 지지호소
- 예비후보자가 상가 등에서 명함을 배부하면서 선거구민들과 포용

### 전화

- 예비후보자 휴대전화에 '기호0번 000입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내용의 통화연결음 사용
- 예비후보자가 직접 통화하면서 상대방 동의를 얻어 음성내용 홍보

### 명함

- 정당의 선거대책기구에 상근자가 '당로고, 선거명, 사무실 주소'가 기재된 명함을 통상적으로 수교
- 예비후보자가 당해 정당의 추천후보자로 결정된 경우 '후보자 000' 기재
- 예비후보자가 할인마트·시장·찜질방·공원 등에서 명함배부 및 지지호소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단독으로 명함배부 및 지지호소
- 예비후보자가 관공버스 등 비정기여객자동차 안에서 명함배부 및 지지호소
- 선거사무원이 업무용 명함에 '제18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000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원 홍길동' 기재된 명함을 통상적으로 수교

### 예비후보자홍보물

-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세대수 100분의 10 이내에서 횡수제한 없이 우편발송
-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수량 범위에서 신문사·시민단체·교회·상가 등에 발송
-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언론기관에 발표된 여론조사결과 내용을 그 출처 등을 밝혀 게재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봉투 뒷면에 지역별 특성에 맞게 각각 다른 공약사항 등 게재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용 봉투를 투명한 비닐재질로 제작·발송

### 예비후보자공약집

- 서적등 판매업자가 공약집을 구입한 사람에게 우편발송
- 서적등 판매업자가 서점이나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통해 공약집 판매
- 공약집에 표시된 가격으로 판매
- 서점에서 공약집 판매
- 공약집에 예비후보자 또는 직계존속의 추천사 기재
- 예비후보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공약집 PDF 파일 전체게시



## 안돼요~~ NO

### 어깨띠 및 표지물

- 선거사무원들이 특이한(동일한) 복장 착용하여 명함배부 및 지지호소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선거사무원 등이 표지물 착용하여 선거운동

### 전화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및 선거사무원 등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기호0번 000입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내용의 통화연결음 사용
- 정당선거사무소에 전화를 가설하여 예비후보자를 위한 전화홍보팀 운영

### 명함

- 정치인 팬클럽대표자 명함에 "000 사랑하는 사람모임 △△자부장" 명함배부
- 예비후보자 명함에 예비후보자 대신 '후보자 000' 게재
- 예비후보자가 주차된 차량이나 아파트 우편함에 명함 꽂아두는 행위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이 단독으로 명함배부 및 지지호소
- 예비후보자가 시내버스·통근버스등 정기여객자동차 안에서 명함배부 및 지지호소
- 자원봉사자가 업무용 명함에 '제18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000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홍길동' 게재

### 예비후보자홍보물

-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우편발송
-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수량 범위를 벗어나 각종 상가에 발송
-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아파트 우편함에 직접 투입하거나 선거사무소에 비치하여 배부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봉투 앞면에 경력 및 선거구호 등 게재
-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선거사무원인 정치인·연예인 등의 지지 및 추천의 글 게재

### 예비후보자공약집

- 예비후보자가 공약집을 구입한 사람에게 방문 배달
- 일반인이 자신의 홈페이지 등 에서 공약집 판매
- 통상적인 가격보다 저렴하게 또는 비싸게 판매
- 가판대, 선거사무소 방문자에게 판매 및 무료 배부
- 공약집에 친분이 있는 일반인 추천사 게재
- 선거일전 90일후에 예비후보자공약집 출판기념회 개최



## 관참아요~~ YES

### 선거사무소 · 선거연락소 개소식

- 선거사무소에 간판등 이용 후보자 선전
- 개소식 고지문자 및 초청장을 제한된 범위의 지인에게 발송
- 개소식 장소에 '연고자 추천서식' 비치하여 참석자로부터 작성·제출 받는 행위
- 개소식에서 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소개(프로필, 인사말 등) 동영상 상영
- 의례적인 범위에서 제공받은 생활환을 법상 구호·자선단체 등에 기부
- 개소식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튜브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 선거사무관계자

- 정당의 계획하에 당원협의회장 명의로 자당 후보자 결정내용, 문자메시지 발송
-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이 후보자와 함께 다니면서 선거구민에게 명함배부
- 후원회의 대표자·회계책임자·유급사무직원의 업무용 명함에 후원회 계좌번호 게재
- 청소·운전등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역무에 대한 대가 제공으로 수당 지급
-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이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된 경우 수당 외 실비만 지급

### 선거벽보 · 선거공보 · 선거공약서

- 중강현실이 적용된 마커와 바코드를 공약서에 인쇄
- 공약서에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게재
- 정규학력이 있는 후보자가 학력을 '미기재'로 표기
- 선거벽보에 태극기·산·새들이 비상하는 사진등을 배경화면으로 게재
-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공보에 과거 정당활동 경력 및 정당 국회의원과의 활동사진 게재
- 선거공보에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의 단독사진 게재
- 선거공보를 규격범위 및 면수 이내에서 접이식 또는 병풍식으로 제작

### 현수막, 어깨띠 등 소품

- 선거사무원이 선거벽보나 선거공보를 피켓에 부착하여 선거운동 소품으로 활용
- 읍면동마다 1매씩 선거운동 현수막 게시
- 해당 읍면동내에서 현수막을 이동하여 게시
- 선거사무원이 태블릿PC(갤럭시탭, 아이패드 등)로 선거공약 등 보여주면서 선거운동
- 선거사무원이 동물모양의 마스코트를 착용하여 선거운동
- 선거사무원이 '투표용지 모형'이나 '여론조사결과 내용' 게재된 피켓을 사용하여 선거운동

### 신문 · 방송광고 · 인터넷광고

- 중앙당 대표자가 신문·방송광고 출연
- 유력 일간신문에 광고문이 단절됨이 없는 2면에 걸쳐 광고
- 종합유선방송국에 방송광고
- 후보자 및 후보자 추천 정당이 인터넷 언론사에 인터넷광고 게재
- 후보자 및 후보자 추천 정당이 선관위 신고없이 인터넷광고 게재
- 배너광고·동영상광고·검색광고 등 방법상 제한없이 인터넷광고 게재





## 안돼요~~ NO

### 선거사무소 · 선거연락소 개소식

- 입구에 간판으로 볼 수 없는 마네킹을 설치하여 후보자 선전
- 개소식 고지문자 및 초청장에 후보자의 사진 · 학력 · 경력 · 선거공약 등 게재
- 개소식에서 선거구민에게 선거관련 인쇄물 배부 · 징구
- 개소식에서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 및 주민들이 지지하는 내용의 동영상 상영
- 개소식에 후원함을 설치하여 후원금을 모금하는 행위
- 의례적인 범위에서 제공받은 쌀화환을 노인정 · 마을회관 등에 기부

### 선거사무관계자

- 선거운동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선거사무원에게 치료비 · 위로비 지급
- 선거사무장 · 선거사무원이 단독으로 선거구민에게 명함배부
- 선거사무장 · 선거사무원의 업무용 명함에 후원회 계좌번호 게재
- 선거사무원을 대신하여 문서작업 등 선거사무를 보조하는 사무직원 고용하여 수당 지급

### 선거벽보 · 선거공보 · 선거공약서

- 공약서를 후보자 이외의 자가 작성 · 배부
- 공약서에 다른 정당 · 후보자 사항 게재
- 정규학력이 있는 후보자가 학력을 '독학' 또는 '무학'으로 표기
- 선거벽보에 어린이와 함께 찍은 사진 게재
-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모두 미제출
- 선거벽보에 타인의 사진 게재
- 선거공보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사 게재

### 현수막, 어깨띠 등 소품

- 선거사무원이 태블릿 PC(갤럭시탭, 아이패드 등)로 선거운동 동영상 보여주면서 선거운동
- 하나의 읍면동에 2매 이상 선거운동 현수막 게시
- 선거일 당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등에 현수막 게시
- 현수막을 도로 위에 설치된 육교나 도로를 가로질러 게시
- 선거사무원이 선거벽보나 선거공보를 소품으로 활용하면서 선거구민에게 배부
- 자원봉사자가 '투표용지 모형'이나 '여론조사결과 내용' 게재된 피켓을 사용하여 선거운동

### 신문 · 방송광고 · 인터넷광고

-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신문 · 방송광고 출연
- 주간지에 신문광고
- 종합편성채널에 방송광고
- 인터넷언론사가 아닌 홈페이지에 인터넷광고



## 관참아요~~ YES

### 공개장소 연설·대담

- 다지점 중계통신망 이용 연락소용 녹화기를 통한 생중계
- 선거사무원이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일정을 선거구민에게 문자로 전송
- 선거사무원이 연설·대담장면을 촬영하여 트위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
- '후보자 등'이 연설·대담차량 주위에서 연설·대담을 준비하고 있을 때 녹음·녹화기 방영
- '후보자 등'이 연설·대담차량에 탑승하여 이동중에 휴대용 확성장치 사용
- 선거사무원이나 자원봉사자가 로고송을 부르거나 울동하는 행위
- '후보자 등'으로 신고한 정당 대표자·연예인 등의 후보자 홍보 영상물을 녹화기로 방영
- 연설·대담차량에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시설물 부착
- 연설·대담차량에 녹화기 외에 LED 홍보판을 설치하여 홍보문자 표출
- 연설·대담차량에 후보자를 닮은 인형이나 슈퍼맨등 캐릭터 인형 설치

### 대담·토론회

- 대학교 학생회가 선거운동기간중 대담·토론회 개최
-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중 대담·토론회 개최
- 언론기관이 선거운동기간 전(선거일전 1년부터)에 복지현안 등 예비후보자의 정견을 알아 보는 토론회 개최
- 언론기관과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 초청대담·토론회 개최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선거운동기간에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선거운동기간에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진행중에 후보자의 인터뷰 동영상을 공정하게 방송

### 전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연예인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안녕하십니까·연기자 ○○○입니다. △△△후보자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내용의 통화연결음 사용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사무소나 가정집 등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 안돼요~~ NO

### 공개장소 연설·대담

- 선거연락소 연설·대담차량을 선거연락소 관할구역 밖으로 이동하여 선거운동에 활용
- 공무원이나 언론인이 연설·대담장면을 촬영하여 트위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
- '후보자 등'이 없이 운전기사만 있는 상황에서 녹음·녹화기 방영
- 차량 부착용 및 휴대용 확성장치 외에 별도의 확성장치를 녹음·녹화기에 설치
- '후보자 등'이 아닌 정당 대표자·연예인 등의 후보자 홍보 영상물을 녹화기로 방영
- 상대 후보자의 전과사실 또는 재판 진행중인 언론보도내용을 녹화기로 방영
- 연설·대담차량에 녹화기 외에 LED홍보판을 설치하여 홍보동영상 표출
- 연설·대담시 청중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전문 미술가의 미술공연

### 대담·토론회

-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가 선거운동기간중 대담·토론회 개최
- 손바닥 TV가 선거운동기간중 대담·토론회 개최
- 사회단체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경제현안 등 예비후보자의 정견을 알아보는 토론회 개최
- 공무원노조가 선거운동기간에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선거운동기간에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진행중에 선거구민의 후보자 지지 메시지 방송

### 전화

- 가정집이나 일반 사무실에 새로이 전화를 가설·증설하여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사무장이 전화홍보 회사에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의뢰하고 그 회사가 전화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선거운동 대행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인터넷 언론사에 인터넷광고 게재
- 후보자 및 후보자 추천 정당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인터넷광고 게재
- 후보자 및 후보자 추천 정당이 아파트 승강기 내부 모니터에 광고 게재

















## 알기쉬운 선거운동 길잡이

---

| 발 행 | 2012년 8월

| 발 행 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기획·편집 | 법규안내센터

| 인쇄처 | 삼부문화(주)